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부숭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22

발의연월일: 2025. 2. 12.

발 의 자:부승찬·조계원·윤후덕

이정문 • 한정애 • 안규백

임오경 · 이개호 · 강선우

강대식 • 이재관 • 박민규

허 영·차지호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은 현재 「군인사법」에 근거하여 군 복무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국방자격의 하나로 운영 중이나, 「군인사법」 제2조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, 준사관, 부사관 및 병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역 군인이 아닌 사람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 있는 현 실태와 부합하지 않을 뿐아니라, 법제처도 2018년 6월 군인이 아닌 자도 응시하는 자격시험을 「군인사법」 규정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하도록 권고한 바도 있음.

이에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의 근거 규정을 「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하고,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자격 취지를 고려하여 자격증의 명칭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4조).

법률 제 호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증 운영
- ③ 제1항제3호의 자격증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전문인력의 양성 등) ①	제14조(전문인력의 양성 등) ①
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	
에 필요한 전문인력(이하"방	
위산업 전문인력"이라 한다)의	
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	
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	
1. •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3.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증 운영
<u>3.</u> (생 략)	<u>4.</u> (현행 제3호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제1항제3호의 자격증 운영
	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 등
	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③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